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가. 제안이유

부서(담당)의 업무특성을 잘 반영하고 군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서(담당) 명칭을 변경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책임행정 도모

나. 주요내용

부서 명칭		담당 명칭		
변경전	변경후	소속부서	변경전	변경후
기획담당관	기획실	기획담당관	감사법무	법무감사
총무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행복추진	희망복지
올림픽기념사업과	올림픽유산과	환경위생과	위생관리	위생
종합민원과	민원과	안전건설과	기반조성	기반시설
주민복지과	복지과	안전건설과	안전관리	안전총괄
도시주택과	도시과	8개 읍·면	주민복지	복지
농축산과	농업축산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부서와 담당의 업무특성을 잘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명칭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기존의 기획담당관을 기획실, 총무담당관을 행정과로 명칭변경하며 올림픽기념사업과를 올림픽유산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과, 주민복지과를 복지과, 도시주택과를 도시과, 농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변경 이상 기존의 2개의 담당관과 5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6개 담당명칭의 변경 내용으로는

기획담당관 감사법무를 법무감사로

주민복지과 행복추진을 희망복지로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를 위생으로

안전건설과 기반조성을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안전총괄로 변경하며

8개 읍·면 주민복지담당을 복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이번 조직개편 안은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8월 30일 일자로 ,대대적 개편이 있는 지 3개월도 안된 실정입니다. 부서명칭 변경 등 잦은 조직개편은 군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안내를 위한 홍보물 및 부서명패 교체 등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며, 최근, 잦은 부서 명칭변경으로 공무원들조차 명칭에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창군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은

잦은 인사와 잦은 명칭변경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성숙도와

조직에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집행부는 평창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으로
2020년도 예산에 6,500만원을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직 명칭에는 시대적 흐름도 중요하지만
군민들 입장에서 정통성을 가지는 것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기획관”을 “기획
실”, “기획실장”으로 수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을“(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을 “기획실, 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올림픽기념사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를 “올림픽유산과, 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시설관리과”로 한다.

제11조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호 중 “농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로 한다.

②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축산과장”을 “기획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③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실장, 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담당관”을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위원은 총무담당관·종합민원과장·주민복지과장”을 “기획실장, 위원은 행정과장·복지과장·민원과장”으로 한다.

⑥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실장, 행정과장, 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담당관”을 “기획실장, 행정과장, 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로 한다.

⑨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로 한다.

⑩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로 한다.

⑪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도시주택과장”을 “기획실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⑫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⑬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종합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을

“ 기획실장, 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⑭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도시주택과장, 농축산과장”을 “도시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⑮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⑯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로 한다.

⑰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⑱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로 한다.

⑲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로 한다.

⑳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㉑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㉒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㉓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㉕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㉖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㉗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㉘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㉙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 농축산과장”을 “도시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㉚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㉛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㉜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㉝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